



## 2023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시행지침 변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의 차단을 위해 추진 중인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이 확대 추진된다.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대상은 닭, 오리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 허가를 받은 농가에서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기러기, 타조 등록 농가까지 확대된다.

또한, 농가당 지원상한액은 5000만원에서 가축전염병 시행규칙 개정·시행(23.7.)으로 시설 강화 규정을 적용받는 닭·오리 농가가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에 지원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원 항목은 터널식 소독시설, 울타리, CCTV, 방조망,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창고 난좌 세척소독기, 폐사체 처리시설 등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 1. 배경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23.7.18.)을 통해 닭·오리 축사에 강화된 방역시설 추가 및 기타 가금류 소독·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 해당 농가는 가전법 시행규칙 시행일('23.7.18.)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함 (~'23.10.18.)

○ (닭·오리) 10만수 이상 사육 산란계 농가 터널식 소독시설, 방역실 및 사육시설 출입구 CCTV 추가 설치 등

○ (축종 확대) 닭·오리축사\* 외에 기타가금류\*\* 추가

\* (기존) 가금류 사육·종축업 허가대상(사육면적 50㎡ 초과 닭, 오리농가) 방역시설 설치

\*\* (추가) 가금류 사육·종축업 등록대상(6종) 방역시설 설치(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기러기, 타조)

법령		축사(사육시설) 면적(㎡)							
		10	50	60	100	200	400	900	1,000
축산법	닭·오리	등록 제외	등록	허가(50㎡초과)					
	거위·칠면조 타조·메추리 꿩·기러기	등록 제외	등록(10㎡이상)						

※ 등록대상 닭·오리농가는 방역시설 설치 의무대상 제외

## 2. 사업지침 변경내용

### ◎ (사업대상자 확대) 예외조항 추가

○ (현행)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농가

→ (변경안) 현행과 동일

(추가) 단, 가축전염병 시행규칙 개정·시행('23.7)으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을 적용받는 가금류 사육·종축업 등록(6종) 농가

\* 가금류 사육·종축업 등록 대상: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기러기, 타조

◎ 지원상한액 한도 변경

○ (현행) 표준사업비(50백만원) 범위에서 소요된 실비를 지원

→ (변경안) 현행과 동일

(추가) 단, 가축전염병 시행규칙 개정·시행('23.7)으로 시설강화 규정을 적용받는 닭·오리 농가는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시기 지원 금액과 관계없이 50백만원까지 지원 허용

### 3. 향후계획

◎ 사업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시·도 추가소요액 재조사\*(~9.18) 및 예산 재교부(~9.22)

\*이월 허용하여 금년 불용액 사용 독려

◎ 사업비 잔여 예산액(600백만원)을 활용한 오리 축사 개선 시범사업 지원 방안 협의(축산정책과)

붙임 지침 변경사항(신·구대조표)	
현행	변경안
○ (사업대상자)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농가	○ (사업대상자) 가축사육·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농가 *단, 가축전염병 시행규칙 개정·시행('23.7)으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을 적용받는 가금류 사육·종축업 등록(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기러기, 타조) 농가 지원 가능
○ (지원상한액) 농가당 표준사업비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을 재차 지원 받는 농가는 지원 상한액에서 기지원액을 감한 액수를 지원 상한액으로 간주	○ (지원상한액) 좌동 - (좌동) * (추가) 단, 가축전염병 시행규칙 개정·시행('23.7)으로 시설강화 규정을 적용받는 닭·오리 농가는 강화된 방역 시설 설치시기 지원 금액과 관계없이 50백만원까지 지원 허용